

제2667호
2019. 7. 1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전화: 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규 칙

제711호 :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규 칙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11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7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(인)

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정기준”을 “지정 기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소매인의 지정기준 등)”을 “(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”을 “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”으로, “50미터”를 “100미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”을 “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”으로, “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시설물의”를 “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동일시설물”을 “동일 건축물 등”으로, “구내소매인”을 “구내 소매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매인간의 거리를 25미터”를 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매인 간의 거리를 100미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“제외한다.”를 “제외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워크인쿨러(Walk-in-cooler)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매장면적에 산입한다.

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.

제4조의 제목 “(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)”을 “(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외부 외부”를 “외부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게임장·문구점·만화방”을 “게임장·문구점·만화방·PC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)”를 “(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지정신청”을 “지정 신청”으로, “지정기준”을 “지정 기준”으로 하며, “적합한 자를”을 “적합한 사람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고장소”를 “공고 장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.

제2조(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.

- 1. 폐업 신고에 따라 담배 소매인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. 다만, 신청 대상은 폐업 신고 된 영업소와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영업소로 한정한다.
- 2.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 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은 이 규칙 시행 후 100미터 거리 제한 규정을 통해 새로이 지정 받은 소매인의 100미터 거리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.

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 신청을 한 사람(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)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지정 기준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소매인의 지정기준 등)</p>	<p>제3조(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)</p>
<p>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<u>50미터</u>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 --- <u>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</u>----- ----- <u>100미터</u> -----.</p>
<p>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시설물의 구조·상주인원·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<u>구내소매인</u>을 지정할 시 다른 구내 소매인과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 <u>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</u>-----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동일 건축물 등</u> ----- ----- <u>구내 소매인</u> ----- -----.</p>
<p>1. ~ 6. (생략)</p>	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<u>소매인</u>간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<u>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매인 간의 거리를 100미터</u> -----.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⑤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상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,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⑤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·계산대(튀김간 포함)·진열장·현금 지급기·에어컨·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·화장실·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<u>제외한다.</u>“</p>	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외한다.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3. 워크인쿨러(Walk-in-cooler)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매장면적에 산입한다.</p> <p>⑥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.</p>
<p>제4조(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4조(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 외부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)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게임장·문구점·만화방 등 청소년(「청소년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)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</p> <p>3.·4. 삭 제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5조(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게임장·문구점·만화방·PC방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
<p>제6조(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)</p> <p>1. 시행규칙 제7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,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공고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.</p>	<p>제6조(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)</p> <p>1. ----- ----- 지정 신청----- 지정 기준----- ----- 적합한 사람을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공고 장소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폐업 신고에 따라 담배 소매인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. 다만 신청 대상은 폐업 신고된 영업소와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영업소로 한정한다. 2.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 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은 이 규칙 시행 후 100미터 거리 제한 규정을 통해 새로 지정받은 소매인의 100미터 거리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. <p>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 신청을 한 사람(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)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p>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개정이유

- 편의점 과다 출점 및 과열 경쟁을 억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며, 자치구 규칙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담배 일반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 “50미터 이상”에서 “100미터 이상”으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- 담배 구내 소매인의 영업소 거리 예외 규정 일부 변경(안 제3조제3항)
- 매장면적 측정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3조제5항제3호)
- 일반 소매인과 구내 소매인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3조제6항)
- 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추가(안 제5조제2호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조)
- 오탈자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
- 개정된 규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(부칙)